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3488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3488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가소29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4. 9. 25.

판결 선고 2024. 12. 1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가소29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3.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인천가정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21. 5. 31. 원고로부터 현금 20,409,000원을 수령한 사실, ② 이는 원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결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③ 피고는 위 20,409,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위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그 책임은 20%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21. 5. 3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피고에게 현금 20,409,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20,409,000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는 C생으로서 2021. 5. 31. 당시 거의 만 16세에 달하는 고등학생이었고, 'D'이라는 구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정도의 지능과 전산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나이, 지능 등과 함께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만연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구체적으로 범죄를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실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다만, 피고는 미성년자로서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다는 인식 없이 그 조직원에 의하여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그 범죄수익 자체를 이득한 바도 없다. 또한, 시중 은행에서 직원을 보내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점, 더구나 사회 경험이 적은 미성년자였던 피고가 와서 그 직원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대적인 과실 비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부주의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081,800원(= 20,409,0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